

의안번호	제 227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0월 일 (제 304 회)

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10월 07일

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0. 07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주요내용

□ 처분

(단위 : m², 천원)

기관명	구 분	사 업 명	수 량	금 액
청원교육 지원청	토 지	외천초 유희임야 처분	101,834	1,175,000
		부강초 유희재산 처분	1,329	84,000
합 계		(2건)	103,163	1,259,000

① 외천초등학교 유희임야 처분

- 재산위치 :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3번지 외 2필지
- 재산현황
 - 토지(임야) : 101,834m²(3필지)
- 추정금액 : 1,175,000천원
- 사 유 : 유희임야를 처분하여 교육(체육)시설 확충에 재투자

② 부강초등학교 유희재산 처분

- 재산위치 :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6-1번지

- 재산현황
 - 토지(전) : 1,329m²
- 추정금액 : 84,000천원
- 사 유 : 유희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재투자

제안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

붙임 :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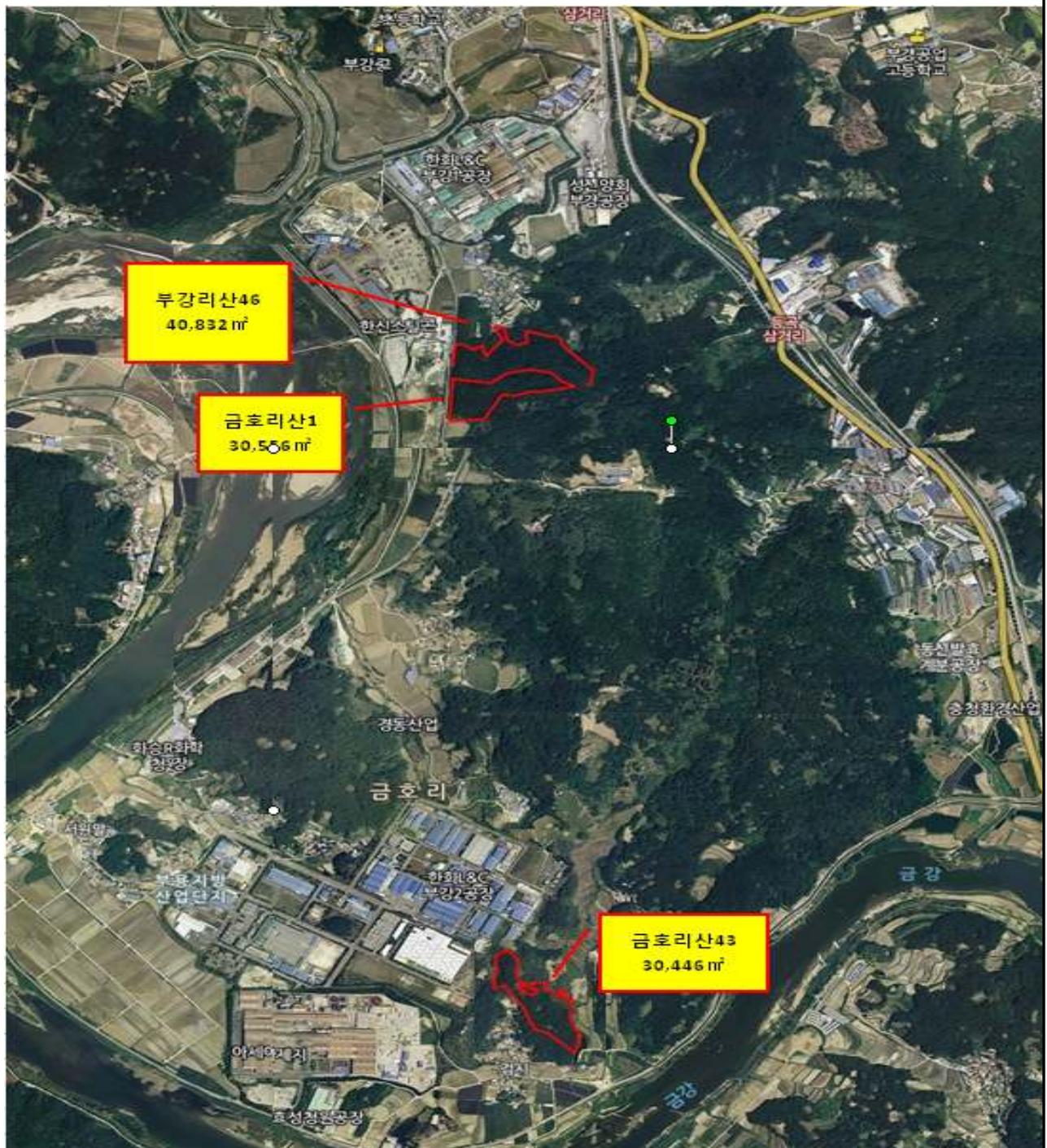
2.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 (천원)	처 분 시 기	처분 사유	매 도 요구자	비고
기관명	구분	소재지	수량(m ²)					
의 천 초	토지	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43 외	101,834	1,175,000	2011. 하반기	유휴임야를 처분하여 학교시설 확충(체육 시설)에 재투자	일반 매각	도면1
부 강 초	토지	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6-1	1,329	84,000	2011. 하반기	유휴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재투자	일반 매각	도면2
합 계 (2건)			103,163	1,259,000				

도면 1 : 외천초등학교 유희임야 처분 위치도

건 명	구분	소재지	지번 (건물명)	지목	수량 (㎡)	추정금액 (천원)	처분사유
외천초등학교 유희임야 처분	토지	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부강리	산1	임야	30,556	412,000	유희임야를 처분 하여 교육(체육)시설 확충에 재투자
			산43	임야	30,446	274,000	
			산46	임야	40,832	489,000	
합 계					101,834	1,175,000	



도면 2 : 부강초등학교 유희재산 처분 위치도

건 명	구분	소재지	지번 (건물명)	지목	수량 (㎡)	추정금액 (천원)	처분사유
부강초등학교 유희재산 처분	토지	청원군 부용면 부강리	1036-1	전	1,329	84,000	유희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재 투자
합 계					1,329	84,000	

